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총리 한덕수 (행정안전부 소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시설 건설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시설사업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공공시설건축과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한시정원 5명(4급 1명, 5급 1명, 6급 2명, 7급 1명)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4. 25. ~ 5. 2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

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공공시설의 배치계획 수립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
11. 상징 건축물·조형물 및 역사공원 설치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
사항

12. 도시건설 추진현황 기록화 및 역사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

제16조제2항 후단 중 “12명”을 “13명”으로 한다.

제18조를 삭제한다.

별표 2 중 총계 “135”를 “140”으로 하고, 일반직 계 “134”를 “139”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130”을 “135”로 한다.

별표 4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시설사업국) ①·② (생략)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9. (생략)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제10조(시설사업국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. 1. ~ 9. (현행과 같음) 10. <u>공공시설의 배치계획 수립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</u> 11. <u>상징 건축물·조형물 및 역사공원 설치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</u> 12. <u>도시건설 추진현황 기록화 및 역사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</u>
제16조(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(생략) ② 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(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은 <u>12명</u> 을,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(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, 4급 또	제16조(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<u>13명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(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.

③ 삭 제

④ (생 략)

제18조(공공시설건축과) ① 건설

청 시설사업국에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17조의3에 따라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공공시설건축과를 둔다.

② 공공시설건축과에 과장 1명을 두며,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.

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문화·예술·복지·보건 및 체육 시설의 배치계획 수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

2. 문화·예술·복지·보건 및 체육 시설의 설계·시공 및 준공에 관한 사항

3. 문화·예술·복지·보건 및 체육 시설의 공정관리 및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4. 문화·예술·복지·보건 및
체육 시설의 운영지원 및 특
화에 관한 사항

5. 상징 건축물 및 조형물 건립
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
항

6. 도시건설 추진현황 기록화
및 역사자료 수집에 관한 사
항

7. 도시 내 역사공원설치 관련
공간시설의 계획 및 배치에
관한 사항

8.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시
행하는 광역도로건설 관련 국
가유산 조사에 관한 사항

④ 공공시설건축과에 두는 공무
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.

⑤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국
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2]

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정원표(제16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135</u>	<u>140</u>	+5
•	•	•	
•	•	•	
일반직 계	<u>134</u>	<u>139</u>	+5
•	•	•	
3급 또는 4급 이하	<u>130</u>	<u>135</u>	+5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43